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 · 적법세금 · 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3/ 11/ 1 통권 1647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牌** 주간지

CEO 에세이 - 이해의원장

'세습을 막아라'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및 회계처리 방법
-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 인허증 양식
-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된다
- 디지털세 필라1 다자조약문(Multilateral Convention) 현재안 공개
- 2024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 사전통지 실시
-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및 제도 운영방향

·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색션

-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일부가 수용되면 서 미편입 전여부분의 보수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반영함 (p.13)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戰略

<18세 미만 미성년자·고교생 채용조건과 필수서류 등>

개념구분	해당내용, 규정, 제약조건, 필수서류
보호대상	알바 등 불리한 조건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보호할 필요성
취업가능 나이 (근로기준법)	① 만 18세 이상 성인은 제한 없음 ② 15세 이상~만 18세(중·고등생) ③ 13세 ~ 15세 : 별도 취직인허증 필요(고용노동부) ④ 13세 미만 금지, 단 예술분야 아역배우만 예외(취직인허증) ⑤ 위반시 2년 징역, 2천만원 벌금
공통서류 (근로기준법 66조)	① 부모 등 친권자, 후견인 동의서 ② 연령인증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③ 근로계약서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67조)	연소근로자(18세 미만)가 표준 근로계약서 기재서명함(기간, 근로시간, 임금 등 구체적 약정)
4대보험	근로계약서 작성대상이므로 4대보험 가입, 적용받음(사업소득자로 계약시 해당 안됨)
부당노동금지	① 근로시간 : 1일 7시간, 1주 35시간(합의시 주5시간 연장가능) ② 야간근무 금지(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는 근무금지), 휴일 근무 금지 ③ 청소년 알바라도 성인과 같은 근무조건(최저임금 이상, 주휴수당 + 유급휴가)
금지, 허용업	금지 : 주류취급 유흥업소(숙박업, 단란주점, 성인노래방 등), 숙박업 · 만화 · 무도 · 피씨방 등 (허용 :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등은 가능)
IT권장	컴퓨터 등 IT기기 사용 · 재택근무 적절 : 전산관리, AI사용 · SNS활동 등 청소년에 적합하고, 유연한 능력을 발휘하는 업종에 매우 효과적인 근무 가능

(안세회계법인대표이사박윤중공인회계사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647호 / 주간 44호

2023. 11. 1. (수)

· 발 행 인: 이윤선
· 제 작: (주)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02) 829-7575
· FAX: (02) 718-8565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18세 미만 미성년자 · 고교생 채용조건과 필수서류 등	표지
긴 급 시 사 해 설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양식	2
C E O 에 세 이	'세습을 막아라'	4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cash back 관련 - 중계무역 질의 - 발주사의 loss 금액 차감 입금 관련 분개문의 - 승강기 교체에 따른 회계처리	6 7
눈에 맞는 절세미인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및 회계처리 방법	8
매일 절세재무요점	- 국세 부과제척기간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비교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10 11
직장인 Survival	자신의 일에 가치를 부여하라	12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의 미환류소득 계산을 위한 기업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은 각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같은 영 같은 항 제2호 라목에 따른 결손금을 의미함 (사전법규법안-16, 2023.04.27) - 1세대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후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소득칙§71③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아파트로 준공된 후 세대전원이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고 직장 소재지가 있는 다른 시로 거주 이전한 경우 소득령§154①(3) 적용 가능함 (사전법규재산-65, 2023.04.27)	13 14
세 정 뉴 스 와 해 설	법인 · 다주택자, 종부세 감세효과 싹쓸이...부유할수록 혜택 커	15
마 케 팅 Tax consulting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일부가 수용되면서 미편입 잔여부분의 보수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반영함	13
세 무 정 보	-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반질 첩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된다	16 26
경 영 정 보	- 폐업 때만 받던 노란우산공제, 이제 재난·질병 때도 받도록 개정	30
회 계 정 보	- 2024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 사전통지 실시 -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및 제도 운영방향	32 41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 환율	5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양식



박윤종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자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기업승계 · 증여 · 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컨설팅
(Deal business)
(829-7575)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자)표준근로계약서

____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년 월 일부터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등으로 기재

2. 근무 장소:

3. 업무의 내용:

4. 소정근로시간: _시 _분부터 _시 _분까지 (휴게시간: _시 _분 ~ _시 _분)

5. 근무일/휴일: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금

- 월(일, 시간)급: _____ 원

- 상여금: 있음 () _____ 원, 없음 ()

- 기타급여(제수당 등): 있음 (), 없음 () · _____ 원, _____ 원

- 임금지급일: 매일(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가족관계증명서 및 동의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출 여부: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구비 여부:

9.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10.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제67조 이행)

11.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2. 기타

-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전화:)

주 소:

대표자: (서명)

(근로자) 주 소:

연 락 처:

성 명: (서명)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 교부 신청서
[] 재교부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15세 미만인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용자 (사용자가 될 자)	사업장명	사업의 종류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15세 미만인 자의 종사업무	임금
	근로시간	사용기간
학교장	학교명	
	소재지	(전화번호 :)
	수업시간	
	의견	
친권자 또는 후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15세 미만인 자와의 관계	동의여부

‘세습을 막아라’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외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krhee@hotmail.com

세습은 구태다. 세습은 양상 레짐이다. 21세기 대명천지 열린 세상에서 권력을 세습하는 나라는 없다. 아버지가 황제라고 해서 아들이 황제가 될 수도 없다. 백작아들이 백작이 되고 남작아들이 남작이 되는 것도 아니다. 아예 제왕과 귀족은 없어졌다.

국민이 주인인 세상이 됐다. 영국처럼 왕이 있고 황태자가 있지만 그것은 국가적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다. 나라의 판촉기구이며 관광상품일 뿐이다. 옛날처럼 민중의 생사여탈권도 없을뿐더러 재산도 그들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더 이상 왕궁은 그들 것이 아니다. 국가 예산의 일부를 타서 그들은 살림할 뿐이다.

일본 천황도 권력을 일찌감치 쇼군이나 총리대신에게 내주었다. 그 와중에서 대동아 전쟁의 괴수짓을 하기도 했다. 최근 망종 극우파들과 함께 다시 군사대국을 도모하고 있다. 또다시 세계평화를 우롱하는 전쟁놀이를 하고 있지만 모두 허망한 것임을 깨닫는 성찰이 그들에게는 필요하다.

의당 의사 아들이 그냥 의사가 되지도 않고 목사 아들이 목사가 될 수도 없다. 자격과 능력을 검증받아야하는 민주세상이다. 아버지가 택시 운전수라고 해서 아들이 택시 운전수가 될 필요도 없다.

프랑스 대혁명은 18세기 말에 일어났다. 영국의 명예혁명과 미국의 독립전쟁의 정신에 기인하여 근대시민사회의 물질적 정신적 혁명의 토대가 되었다. 봉건제로부터 자본주의로의 이행을 위한 부르주아 혁명과 민중혁명의 성격을 갖고 있다. 당시는 추기경과 주교 등 고위 승려층과 귀족들로 특권층은 구성되어 있었다. 그들은 국가토지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정부 고위직을 독점했다. 이에 맞서 기업가와 중산층 부르주아지 그리고 농민들이 일어났다. 당대의 지식인들도 합세했다. 이른바 자유주의 사상이 몽테스큐와 민주주의 사상을 외친 루소같은 계몽주의자들이었다. 다수는 승리했다. 이로써 양상 레짐은 무너졌다. 권력에 따른 구질서는 붕괴됐지만 금력이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했다.

자본주의가 성숙해진 오늘날 이 땅에서는 총수경영학이 화두에 올랐었다. 한 신문의 칼럼이다.

“기업의 오너가 아닌 전문경영인은 총수가 될 수 없다. 기업경영권을 탈취한 뒤 지분을 늘려 총수로 변신할 수 있지만 이는 반란행위다. 총수는 재벌의 오너이자 최고 경영자다. 본인과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으로 다각화된 대규모 기업집단을 지배한다. 한마디로 재벌의 황제이며 세습까지 가능하다. 미국 일본 등 외국에도 대규모 기업 집단은 존재하지만 경영권이 총수와 그 가족에 의해 독점·세습되는 것은 아니다.

총수가 이끄는 재벌체제는 과거 개발연대에 신속한 의사결정과 강력한 추진력 그리고 투자집중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재벌위주 성장에 따른 자원 배분의 왜곡과 정경유착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재벌체제가 성장의 원동력이 아닌 극복해야할 과제로 남게 된 것이다.”

내수기업과 수출기업의 구분은 더 이상 무의미해졌다. 국내에서 제품을 비싸게 팔고 해외에서 싸게 파는 등 국내외를 분리한 경영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불공정거래, 편법상속 등으로 인한 기업 이미지 추락도 국내시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한국기업들이 기득권에 젖은 구태노조, 구태경영을 과감히 결별해야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있다.” 이것이 경제민주화의 본질이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0월 20일 (금)	10월 23일 (월)	10월 24일 (화)	10월 25일 (수)	10월 26일 (목)
미 달 러 (USD)	1357.60	1355.10	1353.20	1343.90	1347.00
일 본 엔 (JPY)	906.18	904.15	903.97	896.74	896.98
영 국 파 운 드 (GBP)	1647.99	1648.14	1657.47	1634.18	1629.94
캐 나 다 달 러 (CAD)	989.43	988.73	988.46	977.88	975.84
홍 콩 달 러 (HKD)	173.50	173.20	172.95	171.78	172.21
중 국 원 (CNH)	185.41	184.76	184.48	183.94	184.18
유 로 화 (EUR)	1436.34	1435.32	1443.73	1423.66	1422.97
호 주 달 러 (AUD)	858.41	856.36	857.18	854.45	847.67
싱 가 폴 달 러 (SGD)	988.82	987.61	990.16	981.99	981.53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84.85	284.24	282.33	280.86	281.80

cash back 관련

Q 당사는(A)는 미국 본사가 100% 소유한 외투법인이고, 당사는 대만에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B)가 있습니다. 본사는 하기와 같은 계약을 일본의 원재료 매입 업체(C)와 cash back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대만에 있는 당사의 자회사(B)는 일본에 원재료 C와는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지 않고 업체(D)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업체 D는 C업체에서 원재료를 사와서 그것을 가공해서 자회사(B)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1. 본사는 당사와 자회사의 C와의 원재료 매입 금액중 일정 금액을 cash back을 해주는 계약을 체결
2. B업체는 C와 직접적인 거래는 없으나, B업체가 D업체에서 구매한 금액중 D업체가 C에게 구매한 금액도 cash back 에 포함함.

질의사항)

1. 상기 거래로 발생한 cash back 금액을 C업체가 당사(A)에게 일괄로 지급하고 A업체는 B에게 해당되는 cash back 금액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tax issue가 있을까요?
2. 상기와 같은 거래로 고려되어야 할 tax issue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A 구매거래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해외 거래처로부터 cash back을 받는 행위 자체로는 특별한 세무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중계무역 질의

Q 당사는 자동차부품을 만드는 제조업체로 당사의 해외법인에 신규로 생산라인을 구축하고자 제조설비를 보내는 업무를 진행하려 하는데 해당설비는 해외(제3국)에서 당사 해외법인으로 직접 이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때 당사 부가세 신고시 해외(제3국) 선적일을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하고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하면 문제가 없는지 여부입니다.

A 귀사의 거래가 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귀사의 의견대로 해외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발주사의 loss 금액 차감 입금 관련 분개문의

Q 당사는 물류업에 종사하는 업체로서 발주사(화주)에게 화물주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흐름을 설명 드리자면, 발주사 → 당사 → 도급사 → 배송기사 순서로 서비스 도급이 이루어집니다.

최근 발주사가 사전 고지 없이 배송기사 패널티(작년 하반기 ~1월 발생)를 사유로 대금을 일부 차감한 후 지불하였습니다.(매출세금계산서 발급 이후)

당사는 도급사에게 해당 금액을 공제한 다음 입금할 예정입니다.

Q. 해당 내역을 매출인식시 어떻게 반영하여 분개할지 궁금합니다. 일단 해당 내역 관련하여 도급사와 상호 합의가 된 상황이라 매출액을 그대로 두고 발주사의 외상매출금을 그대로 상계 하면서 loss금액만큼 도급사의 외상매입금을 차감하여 기장하였습니다. 해당 내역이 회계적으로나 세무적으로 맞는 분개 방식을 안내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A 발주사가 귀사에게 지급할 대금의 일부를 서비스의 불만족에 따라 차감하고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매출액에서 차감순액반영하지는 않고, 일종의 배상이나 보상성격이므로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승강기 교체에 따른 회계처리

Q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가 노후화되어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승강기 교체에 따른 회계 처리 및 감가상각기간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 설치비 5천만원. 기존 건물: 내용년수 40년중 잔존 내용년수 15년 승강기를 교체하는 경우,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라 자산항목을 건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아니면 구축물 또는 집기비품 건물로 회계처리시 건물의 내용년수가 40년이 되나 기존 건물의 내용년수는 1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40년의 내용년수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기존 건물의 내용년수와 동일하게 15년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A 건물의 부속설비가 노후화되어 교체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과 구분하여 별도의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하며, 건축물이 아닌 별도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및 회계처리 방법

상담실 백종훈 차장

유형자산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도 그 자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출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출은 자산의 본래 용도를 변경하거나 생산능률을 향상시키는 지출(자본적 지출)과 영업과정에서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선유지비(수익적 지출)로 구분된다.

취득후의 비용이 자본적 지출로 처리되느냐 또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되느냐에 따라 자산과 이익의 크기가 달라지므로 해당 지출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지출의 구분방법과 회계처리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해당 지출로 인해 생산능력의 증대, 원가절감, 품질향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된다.

하지만 해당 지출이 자산의 당초 예상 성능수준을 회복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비용이라면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여 당기비용 처리한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도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데,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비용도 자본적 지출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자산 가액의 5%에 미달하거나 건당 지출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해당 수선비를 손금으로 반영한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10.14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문단 10.5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예:생산능력 증대, 내용연수 연장, 상당한 원가절감 또는 품질향상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예:수선유지를 위한 지출)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월

국세 부과제척기간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비교

구분		기간	비고
국세 부과제척기간	상속·증여세 이외 국세	무신고	7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10년
		그 밖의 경우	5년
	상속·증여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무신고, 거짓신고, 누락신고	15년
		그 밖의 경우	10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5억원 이상 국세	10년	제척기간 중단 및 정지 없음
	5억원 미만 국세	5년	

화

연금수령 절세 전략(종합과세 피하기)

기간	연금 자원		내야 할 세금	과세 종류
	퇴직소득	운용수익		
1~10년	연 3000만원		연 210만원 (퇴직소득세율의 70%)	분리과세
11년~		연금액 조정 연 1000만원	5.5%	분리과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진료용역분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진찰 및 입원	진찰, 입원관리
접종 및 투약	예방접종, 조제/투약
검사	병리학적 검사(혈액, 조직, 세포, 뇨, 분변, 항생제감수성, 전염병키트검사 등)
	영상진단의학적 검사(X-ray, 초음파, CT, MRI 등)
	계통별 기능검사(순환기계, 신경계, 안과계, 근골격계 등)
	내시경검사(내시경, 검이경 등)
증상에 따른 처치	구토, 설사, 기침, 소양증, 발작, 황달, 파행, 호흡곤란, 혈변, 혈뇨, 마비 증상에 따른 처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내과/피부과 :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위장염, 식이 알러지, 기관지염, 방광염, 췌장염, 피부사상균증, 점액성 이첨판막변성, 만성신부전, 비심인성 폐수종, 부신피질기능항진증, 고혈압, 당뇨병, 단두증증후군, 간질, 폐렴, 급성신부전, 심장사상충증
	안과 : 결막염, 유루증,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각막궤양, 백내장, 건성각결막염, 안검염, 각막염(비궤양성), 포도막염, 녹내장, 각막이상증, 제3안검 탈출증, 고양이 호산구성 각결막염, 첩모중생, 초자체변성, 상공막염, 안검종양, 첩모난생, 안검내번 · 외번
	외과 : 중성화 수술, 무릎뼈 탈구, 고양이 회음 요도루 창냄술, 유선 종양, 추간판 질환, 위내 이물, 제대 탈장, 자궁축농증, 전방십자인대 파열, 항문낭염, 고관절 이형성증, 장내 이물, 담낭점액낭종, 비장종양, 골절, 방광결석, 식도 이물, 담석증, 드레싱
	응급중환자의학과 : 위장관 출혈(혈토, 혈변), 심인성 폐수종, 빈혈, 백혈구 이상, 고양이 비대성 심근병증, 고혈당, 복막염, 흉수, 혈소판 감소증, 중독, 저혈당, 위장관 폐색, 핏뇨, 부정맥,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응고장애, 혈전질환, 심폐소생술, 쇼크처치, 산소공급
치과	구내염, 치은염, 고양이치아흡수성병변, 치근단농양, 발치, 스케일링
항목수	102개



자신의 일에 가치를 부여하라

‘파티를 만드는 사람들’의 대표 박재우씨는 작은 바의 바텐더로 시작해서 6개의 직영점과 8개의 카페 전문 바를 위탁경영하는 사업가로 성공한 사람이다. 종업원으로 일을 시작했던 그가 매년 60억 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리는 사업가로 대변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텐더라는 직업에 큰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바텐더, 그거 누구나 배우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바텐더로 성공해 봐야 얼마나 대단하겠어”라고 말할 때 그는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랐고, 큰 가치를 부여한 만큼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각종 대회에 출전한 그는 1997년 세계 바텐더대회에서는 챔피언에까지 올랐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은 그는 자신의 일을 매개로 카페일 바를 성공시키고 라면전문점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시작했다.

그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 누리고 있는 것을 변변치 않게 여기는 반면에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누리고 있는 것은 가치있게 여긴다. 그러나 세상에 가치없는 것은 없다. 신문지 사이에 끼워져 오는 많은 전단지도 누군가에게는 쓰레기일 뿐이지만 메모지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유용한 도구가 되고 가전제품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정보지가 된다. 이렇게 하찮은 사물이라 할 지라도 필요에 따라 그 가치와 평가기준이 달라지니 무엇이 하찮고 소소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최신 판례 예규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의 미환류소득 계산을 위한 기업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은 각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같은 영 같은 항 제2호 라목에 따른 결손금을 의미함

사전법규법인-16, 2023.04.27

질 의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이 미환류소득 계산을 위한 기업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 (갑설) 개별기업이 발생시킨 이월결손금 전액 공제 가능 (을설) 연결납세 적용 후 이월된 이월결손금 금액만 공제 가능

회 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4항에 따른 기업소득을 산출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은 각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같은 영 같은 항 제2호 라목에 따른 결손금이며, 각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연결집단 내 다른 연결법인의 기업소득을 산출할 때에는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Marketing Tax consulting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일부가 수용되면서 미편입 잔여부분의 보수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반영함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일부가 수용됨으로서 사업자가 지급받은 건물 미편입 잔여부분 보수비 및 보수공사 기간 중 일실임대수입액은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법규소득-572, 2023.01.13

질 의

- 질의인은 서울특별시 AA구 BBB에서 배우자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88 위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고정자산인 토지 및 건물 중 일부가 수용됨에 따라
 - 대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금, 건물미편입 잔여부분 보수비, 보수공사 기간 중 일실임대수입액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며 현재 사업장 이전 없이 계속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

- 부동산 임대사업에 공하던 고정자산인 토지 및 건물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수용되어 사업자가 지급받은 보상금 중
 - 건물 미편입 잔여부분 보수비 및 보수공사 기간 동안 일실임대수입액 보상액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1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일부가 수용됨으로서 사업자가 지급받은 건물 미편입 잔여부분 보수비 및 보수공사 기간 중 일실임대수입액은 「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권리가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세대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후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소득칙§71③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아파트로 준공된 후 세대전원이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고 직장 소재지가 있는 다른 시로 거주 이전한 경우 소득령§154①(3) 적용 가능함

사전법규재산-65, 2023.04.27

■ 질 의

- 분양권을 취득한 후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한 사유(직장 변경)가 발생하여 완공된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 * 양도이후 신청인이 속한 세대전원이 직장 근처로 이사를 전제함

■ 회 신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법규재산-3885, 2023.03.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법규재산-3885, 2023.03.29.

1세대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후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3항에서 규정한 근무상 형편(전근)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그 분양권이 아파트로 준공된 후 세대전원이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고 직장 소재지가 있는 다른 시로 거주 이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됨. 납세의무자가 2 이상의 상속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함

서면부동산-5664, 2023.03.08

■ 질 의

- 상속주택(주택 40채)을 동일세대원과 공동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 본인이 상속으로 취득하여 소유한 지분율은 100분의 40 이하(1/3)이나, 공동상속인인 동일세대원(여동생)과 합산한 지분율은 100분의 40을 초과(2/3)하는 경우
- 종부령 §4의3③(3)나목)에 따라 세율 적용 시 공동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종부법 §9①(1)에 따른 2주택 이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회 신

납세의무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2 이상의 상속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로 보아 같은 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법인 다주택자, 종부세 감세효과 싹쓸이... 부유할수록 혜택 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공개한 국제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법인 1곳당 종부세는 지난해 1263만원으로 2021년(2216만원)의 반절 수준이 됐다. 깎아준 금액은 1주택자 평균 감소액(44만원)의 22배다.

지난해 1주택자 1명당 종부세는 109만원으로 전년보다 44만원 줄었다.

다주택자 1명당 종부세는 258만원으로 전년(410만원)보다 152만원 줄어 들었다. 특히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91만원으로 225만원 감소했다.

법인, 다주택자일수록 감세 혜택이 큰 이유는 정부가 금액으로 깎아주게 아니라 비율로 깎아줬기 때문이다.

고용진 의원은 "주택분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90% 이상을 부담한다"면서 "법인의 종부세 부담은 이미 지난해에 2019년 수준으로 감소했다. 세수결손과 과세형평 차원에서 법인에 대해서는 감세 혜택을 과도하게 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공제인 줄 알았는데... 연봉 10억원도 주담대 소득공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제청에서 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연봉 2억원 초과자는 1만1485명으로 나타났다.

연봉 5억원 초과자는 712명, 연봉 10억원 초과자는 144명에 달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에는 소득 제한이 없다. 고소득자라도 무주택자라면 연봉 2000만원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전세자금대출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고소득자는 구매하는 주택가격이 높아 공제 금액도 크다.

근로자 1명 평균 주담대 소득공제액은 294만원이지만, 연소득 2억원~5억원 구간은 1명당 476만원, 연봉 5억원~10억원 구간은 577만원, 연봉 10억원 초과자는 708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반면 서민을 목표로 설계된 월세세액공제는 기준이 까

다로워 혜택을 받기 어렵다. 지역, 주택크기, 소득기준 등 서민을 설정하는 기준을 좁혀놨기에 수백만 월세 인구가 있음에도 실제 공제 인원은 2021년 기준 38만9000명, 1인당 공제금액은 32만원 수준이다.

고용진 의원은 "연봉이 많은 고소득자의 주거비까지 정부가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며 "월세세액공제의 총급여액 7000만원 기준은 2014년에 정해진 만큼 물가와 급여 상승을 반영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빈집 철거 후 토지 재산세 부담 완화... 농어촌까지 확대

행정안전부가 빈집을 철거하는 집주인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25일 밝혔다.

빈집 철거 시 주택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세금이 일정 기간 후에는 토지 기준으로 부과한다. 이러면 종전에 비해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우선 빈집 철거 후 3년간 종전 주택기준으로 재산세를 매기던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한다.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존 주택세액의 1년 증가 비율을 30%에서 5%로 내린다.

토지 기준으로 재산세 부과기준이 바뀌더라도 급격히 세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2년차부터 일종의 세금 증가 상한을 설정한 건데, 이 증가 폭을 대폭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개발 이슈가 생길 때까지 땅을 쥐고 버티기가 쉬워진다.

토지 기준으로 바뀌더라도 별도합산 과세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대폭 연장한다. 별도합산으로 분류하면 세금 부담이 월등히 낮아진다.

또한, 이러한 재산세 부담 완화안을 도시지역에서 읍·면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중 입법예고 예정이며, 하반기에 개정 작업을 마치고 내년 부과하는 재산세부터 적용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재산세 세제 혜택을 통해 빈집 철거 시 재산세가 경감되고 예산도 지원되는 만큼 빈집 철거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어 주민생활 안전과 거주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국세청, 2023. 10

참고 1

중소기업 판단 관련규정(소득법 §2①)

① (규모 기준) 업종별 연간 매출액 규모 기준 충족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구분)	규모 기준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매출액 1,50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식료품 제조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코르크·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매출액 1,000억원 이하
음료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그 밖의 제품 제조업, 수도,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 제외),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매출액 800억원 이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매출액 60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매출액 400억원 이하

② (자산 기준)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

③ (독립성 기준)

-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일 것
- ②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 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대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대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 나.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④ (업종 기준)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 * 소비성서비스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제외)
 -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 제외)

참고 2	상시근로자
-------------	--------------

- 상시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 * 비거주자는 대상이 아니나, 외국인근로자라도 거주자에 해당하면 상시근로자 포함 가능

- ①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중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 ②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단,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상시근로자 제외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 ❶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①은 제외)
- ❷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②는 제외)
- ❸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❹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 ❺ 위 ❹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❻ 「소득세법 시행령」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연금법」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참고 3 **상시근로자 등 우대내용**

- ① '24년에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가중치(1명 → 2명) 부여(❹와 중복적용 가능)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일부 준용
(청년) 15세 이상 ~ 34세 이하 + 군 복무기간(최대 6년)
(고령자) 65세 이상(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 (장애인)「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등
 - '24년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수가 '23년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신규 채용한 것으로 보며,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수'(서식 「③ 증가인원 수」)를 한도로 함
- ② 신청일 현재 청년창업중소기업*인 경우 청년근로자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에 따라 증가된 고용인원 1명을 2명으로 계산(❹와 중복적용 가능)
 - * '18.1.1.이후 설립한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기간 제외 최대 6년 한

도)이면서 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서 최대주주(출자자)인 법인

③ 신청일 현재 강소기업*(청년친화 강소기업 포함)인 경우 청년근로자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에 따라 증가된 고용인원 1명을 2명으로 계산 (④와 중복적용 가능)

* 고용유지율과 신용평가 등급이 높고, 최근 3년 이내 산재사망 발생이 없는 기업 등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우수한 중소기업(본점 기준)

④ 신청일 현재 수도권*외 지역 소재 사업장의 고용증대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에 따라 증가된 고용인원 1명을 1.5명으로 계산 (①,②,③과 중복적용 가능)

* 조특법 §2에 따른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참고 4	일자리창출 비율 계산사례(①)
-------------	-------------------------

● 2023년 상시근로자

○ 전체

구 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도권	51.2	50	50	50	50	51	51	52	52	52	52	52	52
수도권 외	25.9	25	25	25	25	25	27	27	27	27	26	26	26

○ 청년

구 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명	20.7	20	20	20	20	21	21	21	21	21	21	21	21

● 2024년 상시근로자

○ 2024년 채용·퇴사 계획

번호	일정	채용·퇴사	수도권/수도권 외	청년/청년 외	인원
①	2024.3월	채용	수도권 외	청년 외	1명
②	2024.5월	채용	수도권	청년	1명
③	2024.7월	퇴사	수도권	청년 외	1명
④	2024.9월	채용	수도권	청년	1명

○ 전체

구 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도권	52.5	52	52	52	52	53②	53	52	52③	53④	53	53	53
수도권 외	26.8	26	26	27①	27	27	27	27	27	27	27	27	27

○ 청년

구 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명	22.0	21	21	21	21	22②	22	22	22	23④	23	23	23

● 증가비율

○ 수도권, 수도권외, 청년등을 구분하여 상시근로자 증감인원 계산

구 분		2023년	2024년	증 감
전체	계	77.1	79.3	2.2
	수도권	51.2	52.5	1.3
	수도권 외	25.9	26.8	0.9
청년등		20.7	22.0	1.3

- 일반 중소기업의 일자리창출비율은 5.1%

< 증가비율 계산방법 >

$$\{(수도권 증가인원 + 수도권외 증가인원 + 청년등 증가인원) + (수도권외 증가인원 \times 0.5)\} \div 2023년\ 전체\ 상시근로자\ 수 \times 100$$

$$\{(1.3명 + 0.9명 + 1.3명) + (0.9명 \times 0.5)\} \div 77.1명 \times 100 = 5.12\%$$

- 청년창업·강소기업의 일자리창출비율은 6.2%

< 증가비율 계산방법 >

$$\{(수도권 증가인원 + 수도권외 증가인원) \times 2 + (수도권외 증가인원 \times 0.5)\} \div 2023년\ 전체\ 상시근로자\ 수 \times 100$$

$$\{(1.3명 + 0.9명) \times 2 + (0.9명 \times 0.5)\} \div 77.1명 \times 100 = 6.29\%$$

* 청년등 근로자 가중치는 증가비율 계산 시 적용하며, 가중치를 적용하는 청년등 근로자 증가인원은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을 한도로 함

● 요건기준비율

- 일반, 청년창업, 강소기업 등 기준비율 요건 모두 충족

수입금액	기준비율	일반 기업		청년창업 등 기업	
		비율	충족여부	비율	충족여부
~500억원	2%	5.1%	여	6.2%	여
500억원~	3%		여		여

참고 5

일자리창출 비율 계산사례(②)

● 합병법인

- 합병(수도권 소재)의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제외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

● 2023년 상시근로자

- '23.5월 피합병법인의 상시근로자 40명을 승계한 경우

구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병		60	60	60	60	100	100	100	120	120	120	120	110
피합병		40	40	40	40	-	-	-	-	-	-	-	-
상시근로	67.5	60	60	60	60	60	60	60	80	80	80	80	70

● 2024년 상시근로자

- '23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상시근로자 40명 제외하여 계산

구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병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상시근로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 증감비율

구분	2023년 (①)	2024년 (②)	증 감	
			인 원(③)	비 율(③/①)
상시근로자 수	67.5명	70명	2.5	3.7%

● 기준비율

수입금액	기준비율	일반 기업	
		비율	충족여부
-500억원	2%	3.7%	여
500억원~	3%		여

참고 6

일자리창출 비율 계산사례(③)

● 분할법인

- 분할(수도권 소재)의 경우 분할 후 존속하는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

● 2023년 상시근로자(분할존속법인)

- '23.5월 분할된 법인의 분할 전 상시근로자 수를 분할존속 사업부문 60명, 분할신설 사업부문 40명(청년 등 증가인원 없음)

구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분할존속		100	100	100	100	60	60	60	80	80	80	80	70
분할신설		-	-	-	-	40	40	40	40	40	40	40	40
상시근로	67.5	60	60	60	60	60	60	60	80	80	80	80	70

● 2024년 상시근로자(분할존속법인)

- '23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상시근로자 40명 제외하여 계산

구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분할존속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 증감비율

구분	2023년 (①)	2024년 (②)	증 감	
			인 원(③)	비 율(③/①)
상시근로자 수	67.5명	70명	2.5	3.7%

● 기준비용

수입금액	기준비용	일반 기업	
		비율	충족여부
-500억원	2%	3.7%	여
500억원~	3%		여

참고 7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참고사항

Q. 일자리창출계획서 서식 2번 ①·②·④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소수점은

▶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예시) 1.46명 → 1.5명

Q. 일자리창출계획서 서식 2번 ⑤ 최종 증가비율 계산은

▶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절사함에 유의

* 예시) ⑤ 최종 증가비율 5.12% → 5.1%

Q. 1~11월 중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2022년 대비 2023년 상시근로자 수로 계산

* 예시) 2023년 6월말 법인의 경우 2023년(1~12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대비 2024년(1~12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증가비율로 계산

Q. 매월말로 퇴직하는 근로자는

▶ 매월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계산(매월 말일이 아닌 경우는 제외)

* 예시) 3.31일자 퇴직 근로자는 3월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Q. 해당 사업연도 중에 정규직 직원이 35세 이상이 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 만 3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부터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로 계산

* 예시) 2023.7.20일에 만 35세가 된 경우, 7월부터는 청년등 외로 계산



Q. 5년 전에 신규 채용한 근로자가 2023년에 65세 이상이 되는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 ▶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음.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인 동 근로자는 2023년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고,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에 포함

Q.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의 자녀(직계비속)를 채용한 경우 임원의 자녀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지

- ▶ 제외되지 않음. 최대주주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 등을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채용한 직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최대주주의 자녀 아님) 상시근로자에 포함

Q. 상시근로자 수에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되는지

- ▶ 포함됨. 외국인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제외사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

Q. 근로계약은 1년 이상 했지만,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 ▶ 포함됨. 계약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

Q.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정규직근로자를 채용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은 80시간 내외인 경우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 존재)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 ▶ 포함됨.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 해당 근로자는 0.5명(특례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0.75명)으로 계산

Q. 정규직이 3개월 만에 퇴사해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 ▶ 포함됨. 계약 당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Q.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계약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 ▶ 포함됨. 계약을 연장할 때 총 계약기간이 1년을 넘어간다면, 갱신계약일(재계약)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상시근로자로 포함

Q.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한 내역이 없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지

- ▶ 포함됨.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고, 그 외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

Q. 해당 월에 만 34세 11개월인 정규직근로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 ▶ 포함됨. 청년등 상시근로자는 만15세에서 만34세 이하인 정규직 근로자로, 이때 만34세 이하는 만 35세 미만을 의미하므로 만34세 11개월인 동 근로자는 만 34세 미만에 해당하는 바 생일이 지나기 전달까지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포함

Q. 비상근임원은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는지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근임원은 상시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음

Q. 산재로 휴직 중인 직원에 대한 4대 보험을 납부유예 하지 않고 납부 중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 ▶ 포함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이 산재로 휴직 중인 경우에도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등이 납부되고 있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에 포함

Q. 무급 휴직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 ▶ 포함되지 않음.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등도 납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음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된다

- 행정안전부, 2023. 10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빈집 철거 시, 주택보다 세율이 높은 토지로 과세 됨에 따라 증가하는 세부담을 경감하여 빈집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빈집은 고령화, 인구감소, 도심 공동화, 지역경제 쇠퇴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범용 장소로 활용되는 등 안전·환경·위생 등에 있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 '22년 빈집 현황(국토부·농림부·해수부 자료) : 132,052호(도시 42,356호, 농어촌 89,696호)
 - 그러나 철거 비용,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기대, 철거 시 세부담 증가 등의 이유가 철거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다.

- 이번에 지원되는 세부담 경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빈집 철거 후 토지세액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한다.
 - 현재 「지방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빈집 철거 시 생긴 토지에 대해서는 이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으로 두고 있으나, 이를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 둘째,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존 주택세액의 1년 증가 비율을 30%에서 5%로 인하한다.
 - ※ 전년 주택세액이 A일 경우 세부담상한액은 1년차에 $A \times 150\%$, 2년차에 $A \times 1.05 \times 150\%$, 3년차에 $A \times 1.052 \times 150\%$, 4년차에 $A \times 1.053 \times 150\%$, 5년차에 $A \times 1.054 \times 150\%$

- 셋째, 빈집 철거 후 토지는 나대지가 되어 종합합산으로 과세되어야 하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별도합산* 되고 있는 토지 과세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 별도합산 시 종합합산보다 세율이 낮음

-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도시지역에서 읍·면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한다.

- 현재, 「소규모주택정비법*」은 빈집을 자치단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미분양 주택 등 일시적 미사용 주택 제외)으로 규정하고 도시지역에 한해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세제 혜택을 농어촌 읍·면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지역 빈집 철거

<농어촌 지역 특례 부여 시 세부담 변화(주택 1억, 토지 1.2억 기준)>

(단위:원, 공시지가 연 5% 상승)

구분	'23년 (주택)	'24년 (토지)	'25년 (토지)	'26년 (토지)	'27년 (토지)	'28년 (토지)
현행(A) ※ 농어촌 지역	60,000	176,400	227,830	241,722	260,513	286,038
개선안(B)	60,000	90,000	94,500	99,225	104,186	109,396
세제경감효과 (B-A)	-	△86,400 (△49.0%)	△133,330 (△58.5%)	△142,497 (△59.0%)	△156,327 (△60.0%)	△176,642 (△61.8%)

※ 세부담이 8.6만원 ~ 17.7만원 감소(△49.0~△61.8%)

<도시 지역 특례 강화 시 세부담 변화(주택 1억, 토지 1.2억 기준)>

(단위:원, 공시지가 연 5% 상승)

구분	'23년 (주택)	'24년 (토지)	'25년 (토지)	'26년 (토지)	'27년 (토지)	'28년 (토지)
현행(A) ※ 도시 지역	60,000	90,000	117,000	152,100	228,150	286,038
개선안(B)	60,000	90,000	94,500	99,225	104,186	109,396
세제경감효과 (B-A)	-	-	△22,500 (△19.2%)	△52,875 (△34.8%)	△123,964 (△54.3%)	△176,642 (△61.8%)

※ 세부담이 2.3만원 ~ 17.7만원 감소(△19.2~△61.8%)

- 이번 세부담 경감 제도 개선으로 빈집 철거 이후 세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주택 건설 등 토지 활용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어, 당장 주택 신축 계획이 없어도 철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정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중 입법예고 예정이며, 하반기에 개정 절차를 완료해 내년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세부담 경감 제도 개선과 더불어 농어촌 지역 및 도시 지역의 늘어나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2024년도 예산으로 50억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 향후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예산안이 확정되면,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빈집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청년주도 균형발전 타운 조성사업,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지역 활성화 시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이상민 장관은 “이번 재산세 세제 혜택을 통해 빈집 철거 시 재산세가 경감되고 예산도 지원되는 만큼 빈집 철거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어 주민생활 안전과 거주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참고

재산세 제도개선 비교

□ 제도개선 비교

※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으로 부과 징수

구분	빈집(주택)	철거(토지)	
		현행	개선
①산출세액(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시가표준액	주택 공시가격	토지 공시지가	좌동
공정시장 가액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주택자(43~45%) • 다주택자(60%) 	70%	좌동
세율	주택 세율 적용 (0.05~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세율 적용 • 별도합산(0.2~0.4%) 6개월 적용 후 종합합산(0.2~0.5%) ※ 별도합산, 종합합산은 과세 구간이 달라 공시지가 1억 이상일 경우 세액은 2배이상 차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세율 적용 • 별도합산(0.2~0.4%) 3년 적용 후 종합합산(0.2~0.5%)

②세부담 상한(직전년도 세액 × 세부담상한율)			
직전년도 세액	직전년도 주택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철거 전 주택세액을 3년간 직전년도 세액으로 간주(年증가율 30%) • (농촌) 직전년도 토지세액* * 철거 1년차에는 직전년도 토지세액이 없으나, 직전년도에 주택없이 토지만 존재한 것으로 보아 세액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농촌 구분없이 철거 전 주택세액을 5년간 직전년도 세액으로 간주(年증가율 5%)
세부담 상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억 이하 105% • 3-6억 이하 110% • 6억 초과 130% 	150%	좌동

◆ 주택 및 토지 세율

구분	주택		토지(종합합산)		토지(별도합산)	
	일반	1세대 1주택	과세 표준	세율	과세 표준	세율
0.6억원 이하	0.1%	0.05%	0.5억 원 이하	0.2%	2억원 이하	0.2%
1.5억원 이하	6만원 + 0.6억원 초과금액의 0.15%	3만원 + 0.6억원 초과금액의 0.1%				
3억원 이하	19.5만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0.25%	12만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0.2%	1억원 이하	10만원 + 0.5억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
4.05억원 이하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42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35%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
4.05억원 초과		-				

폐업 때만 받던 노란우산공제, 이제 재난·질병 때도 받도록 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2023. 10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항목 확대 및 중간정산 제도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10.23~12.2, 40일간)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된 사업으로, 현행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 퇴임: 질병·부상으로 법인 대표에서 퇴임 / ** 노령: 만 60세 이상 및 120개월 이상 가입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하여,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개편했다.

* (현행) 폐업, 퇴임, 노령, 사망 → (추가)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더불어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 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중간정산제도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에 발표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복지서비스 강화, 안정적 수익률 제고 등의 나머지 과제들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김봉덕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최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로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지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공제 본연의 기능으로, 소상공인의 재창업 및 위기극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여전히 공제가입자 및 부금 수입이 계속 증가*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공제를 운영해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하겠다”고 말했다.

* 공제 재적 가입자: ('22년말) 166.7만명 → ('23년 8월) 171.7만명 ↗ 5만명 순증
공제 재적 부금: ('22년말) 21.6조원 → ('23년 8월) 23.8조원 ↗ 2.2조원 순증

참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인·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 제37조 【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 ①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p> <p>1. ~ 4.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② (생략)</p>	<p>● 제37조 【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 ① (생략)</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업장에 다음 각 목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지급을 청구한 경우</p> <p style="padding-left: 20px;">가. 주된 영업장이 전파 또는 반파되거나 유실되어 해당 영업장에서 영업을 불가능한 경우</p> <p style="padding-left: 20px;">나. 주요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어 수리·구매하지 않고는 영업을 불가능한 경우</p> <p style="padding-left: 20px;">다. 재난으로 직접적인 시설 및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영업장에서 영업을 불가능한 경우</p> <p>6.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지급을 청구한 경우</p> <p>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동법 제293조의5제1항에 따른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동법 제596조제1항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지급을 청구한 경우</p> <p>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10조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지급을 청구한 경우</p> <p>② (현행과 같음)</p>

2024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 사전통지 실시

- 금융감독원, 2023. 10

I 개요

- 대부분의 상장회사가 포함된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주기적 지정 등 新외감법상 감사인 지정결과에 대한 사전통지(이하 10차 사전통지)를 실시
 - 본통지(11.13일)의 사전단계로 회사와 회계법인이 제출한 지정기초자료를 점검하여 '23년 주기적지정 및 직권지정 대상회사를 선정
 - 재무기준 수치 산정 재무제표 변경(연결 → 별도) 등 6.12일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 방안」을 반영한 외감규정('23.9.14.)을 적용

※ 외감규정 개정('23.9.14.시행) 주요 내용

①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적용 합리화) ①최소 자유선임기간 부여를 통한 재무기준 사유 연속발생 부담 완화, ②재무기준 수치 산정 재무제표 변경(연결→별도)

* ①3년연속 영업손실 또는 ②3년연속 부(-)의 영업현금흐름 또는 ③3년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②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 개선) 고연차 공인회계사 경력기간을 세분화하고 적정 수준으로 점수 조정

③ (지배·종속기업 감사인 지정방식 개선) 지배 또는 종속기업 중 일부가 지정받은 경우 해당 지정감사인과 감사인을 일치하기 위하여 회사가 지정을 요청시 사전통지부터 동일한 감사인으로 지정

④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확보유도) 지정감사인이 감사팀내 산업전문가를 포함하여 감사를 수행하도록 함

⑤ (시행시기)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유예사항*을 제외한 개선내용은 금융위 의결 후 즉시 시행('23.9.14.)

* '24.1.1. 이후 지정대상이 되는 경우부터 적용

지정제도 개요 (붙임1 참조)

- ◇ (주기적지정)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
 - * ①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비상장회사(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이면서 사업 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 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50%이상 & ③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
- ◇ (직권지정) 감리결과 외부감사인 지정조치, 관리종목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사유 발생시 외부감사인을 지정

II 감사인 지정 결과에 대한 사전통지 현황

1 사전통지 전체 현황 (1,261사)

- 금번 10차 사전통지한 회사는 총 1,261사(상장 937사*, 비상장 324사)로 전년 10차 사전통지(1,498사 [상장 1,110사+ 비상장 388사]) 대비 237사 감소
 - * 유가증권 상장 375사 + 코스닥 상장 536사 + 코넥스 상장 26사
- 이중 535사는 '23년에 지정사유가 신규로 발생한 회사이며, 726사는 이전에 발생한 지정사유 등에 의한 2년차 이상* 연속지정 회사임
 - * 유가·코스닥 상장회사,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 지정사유 발생시 원칙적으로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이 지정됨

'23.10월 사전통지 현황

(단위: 사)

구분	상장			비상장			합계		
	신규	연속	소계	신규	연속	소계	신규	연속	소계
주기적지정	166	326	492	17	37	54	183	363	546
직권지정	136	309	445	216	54	270	352	363	715
합 계	302	635	937	233	91	324	535	726	1,261

- 전년 10차 사전통지 대비 주기적지정 회사 119사(신규 46사, 연속 73사), 직권지정 회사 118사(신규 26사, 연속 92사)로 총 237사 감소
 - 대형비상장사 자산기준 변경(1천억원 → 5천억원)으로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의 주기적지정이 전년 대비 89사(신규 46사, 연속 43사) 감소*

- * '23.5.2. 외감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형비상장사 자산기준이 변경되어 대상회사가 감소하였고, 주기적지정으로 既지정된 대형비상장사도 '23사업연도 대형비상장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4사업연도부터 주기적지정에서 제외됨
- 상장사 직권지정의 경우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합리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신규 지정회사가 전년 대비 73사 감소(재무기준 사유 89사 감소 등)하였고 연속지정 회사도 70사 감소하는 등 총 143사 감소
- * 재무기준 연속 발생부담 완화를 위한 재무기준 지정기간 종료 후 자유수입 기간 부여, 재무기준 수치 산정 재무제표 변경(연결→별도) 적용, 연결기준으로 既지정된 회사가 별도기준으로 산정해서 재무기준에서 배제될 경우 및 재무기준 연속지정의 경우 잔여지정기간을 취소토록 적용

신규 감사인 지정 현황(사전통지)

(단위: 사, %)

신규 지정사유*		회사수		
		'23.10차	'22.10차	증감(증감율)
주기적지정		183	229	△46 (△20%)
직권 지정	재무기준(3년 연속영업손실 등)	74	163	△89 (△55%)
	상장예정	202	165	37 (22%)
	관리종목	16	7	9 (129%)
	최대주주(3년간 2회 이상) /대표이사(3회 이상) 변경	15	10	5 (50%)
	감리조치	20	16	4 (25%)
	기타	25	17	8 (47%)
	소계	352	378	△26 (△7%)
합계		535	607	△72 (△12%)

* 지정사유가 중복된 회사의 경우 대표지정사유 표기

2 주기적 지정 현황 (546사)

□ (신규 지정: 183사) 상장사 166사*와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 17사 등 183사**가 신규 지정

* 주기적 지정대상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회사수를 일정하게 분산하여 지정(분산지정)

** 12월말 외 결산법인으로 既 지정된 14사 포함시 금년 중 주기적 지정은 180사

○ 신규 지정된 상장사의 평균 자산규모(별도재무제표 기준)는 3.8조원*으로 유가증권시장은 평균 9.9조원, 코스닥시장은 1,822억원 수준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15사, 5천억~2조원 미만: 4사 등

- 시가총액 상위 100사 중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삼성SDI 등 12개사가 포함되었으며, 유

가증권시장 63사코스닥시장 103사임

- 비상장사는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소유경영미분리 대형회사* 17사를 지정
 - * 주기적 지정대상의 풀림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회사수를 일정하게 분산하여 지정(분산지정)
- (연속 지정: 363사) '21~'22년 주기적 지정대상이 된 363사*에 대해 동일한 감사인으로 2~3년차 감사인 연속 지정
 - * 주기적지정으로 지정된 회사 중 직권지정 사유가 새롭게 발생한 회사, '23 사업연도에 변경된 대형비상장사 자산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 등을 제외

3 직권 지정 현황 (715사)

- (신규 지정: 352사) 금년 신규 직권 지정사유 발생 회사는 352사이며, 363사는 전년 지정사유 발생에 따른 2년차 이상 연속 감사인 지정
 - 신규 지정사유*별로는 상장예정 202사(신규 지정의 57%),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74사(21%) 등의 順임
 - * 지정사유가 중복된 회사의 경우 대표지정사유
 - 상장사(코넥스 포함)가 136사*, 비상장사는 216사가 신규 지정사유 발생
 - * 유가증권시장 상장 32사, 코스닥시장 상장 78사 및 코넥스 상장 26사
- (연속 지정: 363사) 既 지정대상인 363사에 대해 연속지정 대상인 경우 동일한 감사인으로 2~3년차 감사인 연속 지정하고, 감사인 변경사유 발생시 신규 감사인으로 지정

III 회사 및 외부감사인 유의사항

1 회사

- 회사는 지정사유 등 사전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재지정 요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 ① (의견제출) 상·하향 및 동일 감사인군(群) 재지정 등 재지정요청*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 회사는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본통지 1주 이내도 가능)에 금감원에 관련 의견을 제출
 - * (붙임2) 감사인 재지정 사유 참조
 - 상·하위 및 동일 감사인군 재지정은 지정 1년차 회사가 1회만 가능하고, 지정사유에 따라 하향 재지정이 제한되므로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재지정을 요청할 필요
 - ② (제출방법)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fss.or.kr)에 공문과 재지정 사유를 첨부하여 신청(사전통지에 포함된 안내문 참조)



- ③ (계약체결) 사전통지내용에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회사는 본통지 이전에도 지정감사인과 외부감사 계약체결 가능



* 선정 이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에 따라 회사 및 외부감사인은 약 2~3일 후 수령 예상

2 외부감사인

- 지정감사인은 지정회사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 비감사용역 수행, 재무적 이해관계 등
 - 독립성 훼손사유 등을 감사계약 체결전에 해소할 수 있는 경우 신속하게 해소하고, 해소가 어려운 경우 재지정 요청
- 또한, 지정감사인은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을 준수하여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원활히 지정감사계약을 체결하고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참고] 모범규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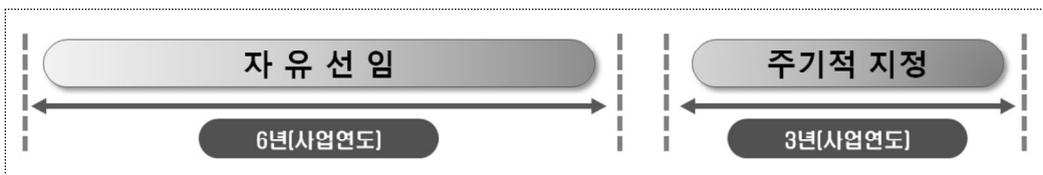
- ① 감사인력·시간·보수 등 감사계약 관련 사항에 대한 지정감사인·회사간 협의 의무화 및 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감사팀 구성 의무화
- ②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자료 요구 및 제3자 검증 요구 등의 행위 제한
- ③ 지정감사인의 디지털포렌식(회계부정조사) 요구를 위한 요건 명문화
- ④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발생시 해소 절차 구체화
- ⑤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지원 금지 규제의 내용 명확화

IV 향후 계획

- 금감원은 사전통지 후 2주 동안 재지정 요청 등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반영하여 11.13일에 본통지할 예정
 - 회사·지정감사인은 본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하는 점을 유의할 필요
 - * 사전통지내용에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본통지 이전에도 외부감사 계약체결 가능
- 한편, 지정보수 협의에 난항을 겪어 기한내 계약체결이 어려운 경우,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 예정
 - * 연장사유를 적시하여 공문으로 요청할 경우 통상적으로 2주 내외 추가기한 부여
 - 과도한 지정감사보수 요구 등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에 따른 회사의 부당행위 신고에 대해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금감원·한공회)」에서 적극 대응하고
 - 부당행위 신고 후 지정감사인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조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을 우선 취소할 예정

붙임 감사인 지정제도

- ① (제도개요) 감사인 지정제도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을 개선하고자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는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업무 위탁)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임
 - (주기적 지정)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에 대하여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증선위(금감원)에서 지정함
 - * ①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비상장회사(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이면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 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 50%이상 & ③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



- (직권 지정) 증선위 감리결과에 의한 감사인 지정조치, 선임기한 내 감사인 미선임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직권 지정사유) 감사인을 지정
 - ※ 新외감법 개정으로 최대주주대표이사의 변경이 잦거나,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장사 등 직

권지정사유가 확대

구분	주요 직권지정 사유
기존 지정사유	①상장예정법인, ②감사인 미선임, ③감리결과 조치, ④상호저축은행법상 지정요청 ⑤관리종목, ⑥횡령·배임 발생 등
신설	①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한 회사, ②기관투자자인 주주의 지정요청 ③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히 미달한 회사, ④지정기초자료 미제출 ⑤재무기준(3년 연속으로 영업손실, 負의 영업현금흐름, 이자보상배율 1미만) ⑥과거 3년간 최대주주(2회)·대표이사(3회) 변경, ⑦투자주의 환기종목 등

* 볼드체는 상장회사에만 적용되는 지정사유

② 지정시기(외감법 시행령 제17조, 외감규정 별표 2)

- (주기적 지정) '23.9.1. 기준으로 주기적 지정대상을 선정하여 지정결과에 대해 사전통지*하고, 재지정 요청 등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4주 후에 본통지* 함
 - *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에 따라 회사 및 외부감사인의 수령은 추가 시일이 소요
 - ※ 회사와 회계법인은 9월 2주 이내에 지정관련 자료를 제출
- (직권 지정)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및 회사에 충분한 준비시간을 부여하고자 사업연도 개시 전*(다음 사업연도)에 지정
 - * 단, 상장예정법인, 회사요청, 감사인 미선임, 감사인 부당교체 등의 경우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지정
 -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6주가 지난 날(지정기준일)에 감사인 지정사실을 해당 회사와 감사인에게 통지
 - 본통지 4주 전에 회사와 회계법인에게 지정예정내용을 알리고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통지

③ 감사인 지정방법(외감규정 별표 4)

- 지정감사인이 특정된 경우에는 자산순서와 상관없이 우선 지정하고, 감사인(회계법인) 별 지정점수*에 의해 감사인 지정순서를 정한 후 자산규모가 큰 지정대상회사를 순차적으로 대응 지정

$$* \text{감사인 지정점수} = \frac{\text{감사인 점수}}{1 + \text{감사인으로 지정받은 회사 수1)}$$

1) 지정받은 회사의 자산총액 가중치 : 2조원 이상인 경우 3배, 5천억원 ~ 2조원 2배

<지정방식 예시>

지정대상회사				지정감사인		
회사명	자산규모	지정군	연속지정 감사인	회계법인명	감사인지정점수	지정군
A사	20백억원	다	-	I 법인	100,000 점	가
B사	15백억원	다	-	II 법인	95,000 점	가
C사	12백억원	다	-	III 법인	90,000 점	가
D사	9백억원	라	-	IV 법인	80,000 점	나
E사	8백억원	라	II 법인	V 법인	75,000 점	나
F사	5백억원	라	-	VI 법인	70,000 점	나

————→ ① 우선지정
-----→ ② 자산순 지정

붙임2 **감사인 재지정 사유(외감법 시행령 제17조)**

※ 아래 ①, ②, ③의 재지정 사유는 지정 1년차에 1회만 신청 가능하며, 기존 지정사유에 따라 동일 감사인이 지정된 지정 2·3년차에는 동 사유로 재지정 요청을 할 수 없음

① 지정받은 회계법인보다 상위 집단의 회계법인을 지정요청하는 경우(상향 재지정)

회사가 속한 군(群)	기지정한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재지정할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가군을 재지정요청	나군 이상을 재지정요청	다군 이상을 재지정요청
나군	나군	가군	-	-
다군	나군	가군	-	-
	다군	가군	가~나군	-
라군	나군	가군	-	-
	다군	가군	가~나군	-
	라군	가군	가~나군	가~다군

② 지정받은 회계법인보다 하위 집단의 회계법인을 지정요청하는 경우(하향 재지정)

회사가 속한 군(群)	기지정한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재지정할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나군을 재지정요청	다군 이상을 재지정요청	라군 이상을 재지정요청
나군	가군	나군	-	-



다군	가군	나군	나~다군	-
	나군	-	다군	-
라군	가군	나군	나~다군	나~라군
	나군	-	다군	다~라군
	다군	-	-	라군

※ 요청 가능 지정사유 : 회사요청(법 § 11①1호), 주기적 지정(법 § 11②), 상장예정(영 § 14⑥1호)

③ 지정받은 회계법인과 동일 집단의 회계법인을 지정요청하는 경우(동일군 재지정)

회사가 속한 군(群)	기지정한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재지정할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가군을 재지정요청	나군을 재지정요청	다군을 재지정요청	라군을 재지정요청
나군	가군	가군	-	-	-
	나군	-	나군	-	-
다군	가군	가군	-	-	-
	나군	-	나군	-	-
	다군	-	-	다군	-
라군	가군	가군	-	-	-
	나군	-	나군	-	-
	다군	-	-	다군	-
	라군	-	-	-	라군

- ④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⑤ 연결 지배·종속회사(둘다 지정감사사)가 동일 감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 ⑥ 회생절차 진행중인 회사가 법원이 허가한 감사인으로 지정요청하는 경우
- ⑦ 외국인투자회사 중 출자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하는 경우 등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및 제도 운영방향

- 금융감독원, 2023. 10

I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 금융감독당국은 '23년 중 회계부정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5명에게 총 2억 1,340만원(1인당 평균 4,268만원)의 포상금 지급
 - 금년 9개월간의 지급금액이 전년 대비 15,690만원 증가(278% ↑)하였으며, 남은 3개월 동안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단위 : 건, 만원)

구분	'08년~'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주)
지급건수	10	1	2	12	5	2	5
지급금액	11,360	330	11,940	40,840	22,860	5,650	21,340
평균지급금액	1,136	330	5,970	3,403	4,572	2,825	4,268

주) 금융감독원에 신고접수된 제보 건 중 '23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간의 지급 건임
 - 올해 5월 개정된 관련 규정에 따라 경조치*(경고 또는 주의)된 2건에 대한 신고자에게도 포상금 지급

* 재무제표 심사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경고 또는 주의 조치
 - 금융감독원은 포상금 수령 전 사망한 신고인에 대하여 법정상속인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률 검토 및 제반 필요 행정절차 수행 ◐(적극행정 사례)

II 회계부정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 (접수) '22년 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상장법인 등의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총 115건*으로 전년 대비 25.0% 증가
 - * '23.1월~9월 중에는 76건(익명신고 15건) 접수

- 이 중 22건은 익명신고로 회계부정 익명신고제도가 신고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

<회계부정신고 접수현황>

(단위 :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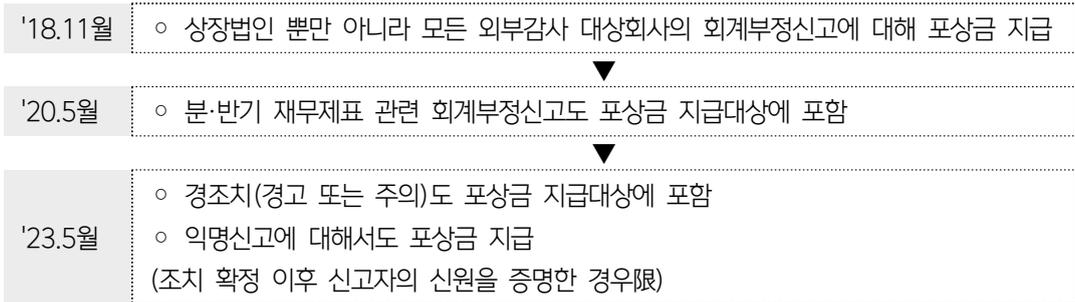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회계부정 신고건수	19	44	93	64	72 (17)*	92 (14)*	115 (22)*
전년대비 증가율	△13.6	△131.6	111.4	△31.2	12.5	27.8	25.0

* 익명신고로 접수된 건

- (처리) 회계부정신고를 기반으로 회계심사·감리에 착수한 회사는 '17년부터 '22년까지 총 25사*
 - * ('17년) 2사 → ('18년) 6사 → ('19년) 3사 → ('20년) 6사 → ('21년) 5사 → ('22년) 2사
- 이 중 23사에 대하여는 조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2사는 현재심사 또는 감리 진행 중임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로 판단하여 검찰고발·통보,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

III 포상금 제도 운영방향

① 포상금 지급대상 회계부정신고 범위 확대



② 포상금 지급금액 증액 및 산출방식 간소화

- 신고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포상금 최고 지급금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배 증액하고,
 - 부정행위의 중요도 등급을 10개에서 4개로 간소화
- 기여도 산정 시 자의적 또는 정성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세부 산정항목을 조정·단순화

③ 내부신고자에 대한 조치시 면제 또는 감경 근거 마련

- 신고자가 대표이사 등의 지시를 받아 회계부정에 관여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조치를 면제 또는 감경받을 수 있는 근거를 관련 법령에 마련

※ '18년부터 '23.9월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 27건 중 18건(67%)이 내부자의 제보임

[예시] 재무담당임원이 대표이사의 지시로 분식회계에 관여하였다가 이를 회계부정신고로 제보한 경우

- ①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다른 관련자에게 강요하지 않았을 것
- ② 신고사실이 증신위 등이 既보유한 정보가 아닐 것
- ③ 조사완료 시까지 협조할 것

Case1. ①~③ 모두 충족 : 검찰고발·통보, 과징금 부과 조치 면제 & 포상금 지급

Case2. ①~③ 중 하나 이상을 충족 : 조치 감경 & 포상금 지급

참고 1 회계부정신고 관련 주요 Q&A

1

내부신고자의 신원이 알려질까 봐 걱정되는데, 신분보호와 관련된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외부감사법 전부개정('18.11.1 시행)으로 내부신고자의 신분보호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 *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시 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 신고자에 불이익한 대우를 한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 부과(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
- 또한, 저희 금융감독원은 관련 부서 내 변호사를 신고자 보호전담인력으로 지정하는 등 제보자 신분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

상장법인의 회계부정행위 신고에 대해서만 포상금이 지급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 '18.11월 이후 신고에 대해서는 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회계부정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 상장법인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회계부정 신고는 금융감독원에서, 비상장법인의 회계부정신고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접수 및 검토 수행

3

익명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 증권선물위원회 등의 조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자의 신원을 증명한 경우에는 지급 절차를 거쳐 포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 신고대상회사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등의 조치 여부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상의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

참고 2 회계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사례

※ 아래의 신고사례는 신고자의 신분보호 등을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 (사례①) 종속기업에서 발생한 분식회계에 대한 모회사의 은폐 사실 제보

- A사는 종속기업인 B사를 내부감사하는 과정에서 B사의 회계담당임원 甲이 적자인 실적을 가공의 재고자산을 허위계상하는 방식을 통해 흑자로 만들어 모회사에 보고하여 왔다는 사실을 적발하였으나, A사는 사태가 커질 것을 우려하여 甲을 징계없이 퇴사시키는 것으로 분식회계 사실을 사실상 은폐하였음
- A사의 전략기획실 직원이었던 乙은 당시 감사실에 결원이 생겨 B사 내부감사 업무에 임시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B사의 분식회계 및 A사의 은폐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관련 내부감사자료를 확보하게 되었음
- 乙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A, B사의 분식회계 사실을 내부감사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였고, 감리결과 A, B사 및 회계담당임원 甲에 대해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신고자 乙은 회계부정신고 포상금을 지급받았음

□ (사례②) 거래관계가 없는 거래처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제보

- 소형가전업체 C사의 영업사원 丙은 평소 거래관계가 없던 D사와 재화의 이동이 없음에도 매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있음을 이상하게 여겨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동 사실을 제보하였음
- 금융감독원은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거래처인 D사에 대해 거래가 발생한 사유 등을 조사하다가 C사와 D사 간에 수상한 이면약정이 있음을 발견하고 본격적인 감리에 착수함
- 당시 상장을 추진 중이던 C사는 매출액이 상장요건에 미달하자 지인이 운영하던 D사*와 공모하여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일명 '끼워넣기 매출')하는 등 가공의 매출을 계상한 사실을 확인함
- * 당시 자금난을 겪던 D사는 C사로부터 수십억원의 자금을 대어받는 조건으로 분식회계에 가담
- C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해 검찰통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신고자 丙은 회계부정신고 포상금을 지급받았음

□ (사례③) 우연히 알게된 F사의 분식회계 사실 제보

- 제보자 丁*은 휴대폰 회로기관을 납품하는 F사가 당기순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비용처리해야 할 항목을 가공의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였다는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함
 - * 자신은 F사와 관련이 없으며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우연히 F사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
- 제보내용을 토대로 감리를 실시한 결과,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여신을 차입하고 있던 F사가 마진을 하락으로 인한 재무상태 및 손익구조의 악화가 자금조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 하청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외주가공비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거짓 회계처리하여 당기순이익을 조작해 왔음이 확인되는 등 제보내용이 사실로 밝혀짐
- F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신고자 丁은 회계부정신고 포상금을 지급받았음

참고 3 **회계부정신고 포상규정 개정('23.5월) 주요 내용**

① 건별 포상한도 기준금액 증액

- 부정행위의 중요도 등급을 10개에서 4개로 간소화하고, 등급별 기준금액도 전반적으로 상향

[참고]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별표> 포상금 산정기준

2. 부정행위의 중요도별 포상금 기준금액

(단위 : 백만원)

구분	회사 또는 감사인에 대한 주된 조치	기준금액
1등급	고의Ⅱ단계 이상의 조치	1,000
2등급	고의Ⅲ~Ⅴ단계 조치 (중과실 가중시 최대조치 포함)	500
3등급	중과실Ⅰ~Ⅴ단계 조치 (과실 가중시 최대조치 포함)	300
4등급	과실Ⅰ~Ⅲ단계 조치 또는 경고 또는 주의 (고의 감경시 최소조치 포함)	30

※ 해당 사업연도말 자산총액(개별 또는 별도재무제표 기준)을 기준으로 5천억원 이상인 회사의 부정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상기 금액의 2배를 기준금액으로 함



② 기여도 산정 항목 중 정성적 요소 최소화

- 차감요소 중 자의적 또는 정성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세부 산정항목을 조정·단순화

3. 기여도 : 기여율에 가중치를 곱한 후 이를 합산한 비율로 함

항 목	기여율(%)			가중치(%)
	100-80	70-40	30-0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상장·비상장 여부)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제2조제5호) 등*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및 금융기관도 포함	비상장주식회사	40
신고 내용과 조사 결과와의 연관성	대부분	일부	극히 일부	30
제출한 증거자료의 충분성 및 중요성	우수	양호	미흡	30

③ 금융감독원장 조치에 대한 증선위 포상 심의의결 근거 명확화

- 증선위의 포상 심의의결 대상에 금융감독원장 조치(경고 또는 주의)도 포함되도록 근거를 명확화

참고4

회계부정 신고방법 등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1

신고대상

-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행위 등 외감법에서 정한 회사 및 감사인의 회계부정행위(외감법 제28조 제1항)

< 회계부정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8①) >

- ❶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위배된 회계정보 작성 및 위조·변조·훼손·파기 행위
- ❷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행위
- ❸ 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 포함)이 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하거나, 회사가 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 포함)에게 대리작성을 요구한 행위
- ❹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행위
- ❺ 기타 회계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감춘 행위

2 신고요건

-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 인터넷, 우편, FAX, 모바일 등을 통해 신고 가능

3 신고접수기관

접수기관	신고대상
금융감독원	주권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한국공인회계사회	기타 비상장 외감대상 회사 등 (금감원 신고대상회사 제외)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신분에 관한 비밀을 엄격히 유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관련회사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음

4 모바일을 통한 신고방법 [금융감독원, 실명신고]

- ❶ 금융감독원(m.fss.or.kr) 접속
- ❷ 회계부정신고 클릭
- ❸ 신고하기
- ❹ 개인정보수집 동의 여부 선택(실명신고의 경우 동의 필수), 본인인증 후 "다음단계" 클릭
- ❺ 개인정보 및 신고내용 입력후 "등록" 클릭



5

인터넷 등을 통한 신고방법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가. 금융감독원

1) 인터넷

①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http://www.fss.or.kr>) 오른쪽의 「회계부정신고」 클릭

(실명신고)

② "신고하기" 클릭

③ 개인정보수집 동의 여부 선택(실명신고의 경우 동의 필수), 본인인증후 "다음단계" 클릭

④ 개인정보 및 신고내용 입력후 "등록" 클릭

(익명신고)

② "회계부정 익명신고" 클릭

③ "신고하기" 클릭

④ 개인정보 동의 여부 선택(동의 거부 가능)

⑤ 신고내용 입력 후 "등록" 클릭

2) (우 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38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 회계감리기획팀 (우편번호 : 07321)

3) (F A X) 02-3145-7328 (회계감리2국 회계감리기획팀)

나. 한국공인회계사회

1) 인터넷

① 한국공인회계사회 포탈사이트 (<http://www.kicpa.or.kr>)의 하단 배너 「외부감사 애로사항 신고·상담」 클릭

② 하단 회계부정 신고·포상 하위의 "신고·포상" 버튼 클릭

③ "실명신고" 및 "익명신고" 중 선택

④ 개인정보수집 동의 여부 선택(실명신고의 경우 동의 필수) 후 "다음단계" 클릭

⑤ 신고내용 입력 후 "저장" 클릭

2) (우 편)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7길 12(충정로 2가)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윤리행정실

(우편번호 : 03736)

3) (F A X) 02-3149-0390 (감리·윤리행정실)